

#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정인화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169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11. 1.

발의자 : 정인화 · 홍문표 · 진선미  
주승용 · 황주홍 · 최도자  
이용주 · 김종회 · 송기석  
이동섭 · 박준영 의원  
(1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에서는 식용천일염의 생산을 목적으로 염전을 개발하거나 식용천일염을 생산할 수 없으며, 화학부산물소금이나 비식용으로 생산·수입된 소금은 제조·저장·가공·판매 등을 할 수 없음.

그러나 소금은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식품이지만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고 불법적인 염전개발 또는 식용천일염의 생산·판매 등의 행태도 근절되지 않고 있음.

이에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에서 염전을 개발하거나 화학부산물 또는 비식용으로 생산·수입된 소금으로 제조·판매 등을 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징역형을 상향하려는 것임(안 제60조).

법률 제 호

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금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7년”을 “10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0조(별 칙) 다음 각 호의 자는  <u>7년</u>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        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         병과할 수 있다.</p> <p>1. ~ 4. (생 략)</p>	<p>제60조(별 칙) -----  <u>10년</u>-----          -----         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